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가단50907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 고 1. A

2. B

3.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박일섭

4.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하

담당변호사 이연구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031,240원 및 그 중 60,719,525원에 대하여 202

2. 3. 29.부터 2022. 7. 12.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21. 8.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A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24. 접수 제1408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B, 주식회사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2021. 7.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A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6. 접수 제1164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5. 6. 11.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A은 위 약정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후 수회에 걸쳐 보증기한을 연장하다가 2021. 6.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기한 2022. 6. 3.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B과 피고 A이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그 중 연대보증 부분을 ‘이 사건 구상 연대보증’이라 한다).

신용보증약정	약정일	보증기한	대출예정금액	보증금액	연대보증인
신용보증약정	2015. 6. 11.	2016. 6. 10.	97,800,000원	83,130,000원	피고 A
2021. 6.경 변경계약		2022. 6. 3.			B 피고 A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에 기해 피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으나, 2021. 12. 8. 이자연체로 인하여 보증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3. 29.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60,719,52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의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3,311,715원이다.

나.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20. 6. 5.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대출과 별도로 금전을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피고 A이 소외 회사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갑 제1호증의 3, 을다 제12호증의 2).

2) 피고 A은 2021. 7. 6. 피고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6. 접수 제1164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의 근저당권 설정 등

- 1) 피고 A은 2021. 8. 20. 소외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2021. 7. 31. 기준 2,032,968,013원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갑 제8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물품 연대보증’이라 한다).
- 2) 피고 A은 2021. 8. 2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10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24. 접수 제1408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A의 무자력 등

- 1) 이 사건 물품 연대보증 체결 이후인 2021. 8. 20.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 2) 한편 소외 회사는 2020. 12. 31.경 한정 의견이라는 감사의견을 받았고, 2022. 2. 27.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2022. 5. 9.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22. 8. 30.경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수원회생법원 2022회합107). [인정 근거] 다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2 내지 14호증, 을라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구상 연대보증을 기한 원고의 A, B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

나. 적용법조

- 1)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구상 연대보증에 따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 내지 사후 구상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최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초과 상태인 피고 A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다.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각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과 피고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8호증, 을다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주장(2022. 7. 14.자 준비서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1. 7. 6.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1,515,000,000원이나 소극재산은 총합계 3,536,468,013원 중 피고 C 2,032,968,013원(보증채무 발생일 2021. 8. 20., 이 사건 물품 연대보증)]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1,503,500,000원에 불과하고 피고 A은 2021. 7. 6.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보일 뿐인 점, 소외 회사의 대표자가 2021. 5. 10.경 피고 A에서 피고 B으로 변경되었고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소외 회사의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추진하다가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는데 당시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199,600,000원으로 평가하였을 뿐이고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 연대보증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당시 이미 연대보증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된 상태였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21. 8. 24.로부터 수개월 후인 2021. 12. 8.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에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 연대보증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원고가 2022. 3. 29.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 연대보증채권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구상 연대보증채권은 피고 C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A이 피고 C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 ①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A의 유일한 부동산으로 보인다.
- ② 피고 A은 2021. 8. 20. 이 사건 물품 연대보증을 통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나아가 피고 A은 같은 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켰다.
- ③ 이 사건 물품 연대보증의 금액은 2,032,968,013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보다 많다.
- ④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기존 물품대금채무만 포함된다고 보일 뿐이다. 구체적으로 관련 연대보증계약서(갑 제8호증의 3)에는 다음과 같은 즉, ‘1. 소외 회사가 피고 C에 지급할 물품대금은 2021. 7. 31. 현재 2,032,968,013원임을 확인한다. 2. 연대보증인(피고 A과 E)은 위 물품대금의 변제기를 2022. 12. 31.로 정하여 연대보증하는데 해하여 이의 없이 동의한다. 4. 연대보증인 피고 한 대중은 위 물품대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채권최고액 11억 원으로 근저당권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연대보증채무자인 피고 A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피고 A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소외 회사는 피고 C로부터 20억 원을 초과하는 수산물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피고 A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 C는 선의이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C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사해행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기존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 A은 이 사건 물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무초과에 이르렀다.

② 비록 피고 A의 채무는 대부분 보증채무로 보이나, 피고 A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피고 C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피고 A으로부터 기존 물품대금채무를 회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소외 회사가 피고 C로부터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피고 A은 그 이후 채무 변제력이 낮아졌다.

4) 소결론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해행위에 해당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성봉

목 록

1동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7층 호 154.5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 3083.4㎡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3083.4분의 17.30

- 끝 -

